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층 계단실 벽체의 전이구조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기 바람 ○ 기둥의 불일치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구조계획을 검토하기 바람
	(토질·기초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측 SGR차수벽이 인접대지를 침범함에 벽체 조정 등 관련 대책 수립 필요 ○ H-pile 근입장, CIP 근입장, 각각부 안정성에 대해 현장지반조건을 고려한 구조검토 결과를(지반정수산정포함) 제시하시기 바람(근입장 추가확보 고려)
	(기 타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공 시 인접건축물에 피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민원발생(소음, 진동, 비산먼지 등)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○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공, 자재, 인력 등이 인천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○ 입면에서 상부 장식부분 채도 낮추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계획을 검토할 것 ○ 단순입면 디자인의 개선 요함(면의 요철, 창문의 위치 등으로 개선 바람)
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 </p> <p>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-------------	---